

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안내

-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 -

□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(2017. 12. 30. 공포, 2018. 7. 1. 시행)

-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에서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.

<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내용 >

❖ **관련조항 : 법 제9조 제4항 제24호**

❖ **개정내용 :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금연구역 단계적 지정**

- 1단계 (2018.7.1.~) : 실내휴게공간 면적 75㎡이상 영업소
- 2단계 (2019.1.1.~) : 실내휴게공간 있는 모든 영업소

※ 동법 제9조 제4항 제24호 :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실내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

❖ **흡연실 설치 기준(동법 시행규칙 별표2)**

- 가급적 실외(옥상 포함)에 흡연실을 설치하되,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

- ① 실외 :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,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, 지붕, 바람막이 설치 가능
- ② 실내 : 완전 밀폐하고,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

※ 흡연실의 표시 부착,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

❖ **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(동법 시행규칙 별표2)**

-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
- 부착위치 :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

※ 건물 출입구 및 계단, 화장실 등 주요위치

- 표지 포함내용 :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, 위반 시 조치사항 등

❖ **시설의 소유자(관리자 등)등의 책임 : 금연구역 지정 의무**

-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, 금연구역 표시부착, 흡연실 설치 시 법령기준 준수

□ 행정사항

-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**10만원**, 금연구역(흡연실) 설치기준 미준수 **500만원** 이하 과태료 부과
- 변경된 제도의 적응 및 흡연실 설치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('18.9.30일한)부여

□ 문의사항 :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 (담당 김미현 3396-5672)